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4월 9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김영희 의원 발의]

#### 1. 제안이유

- 최근에 수동적인 개념의 부모교육에서 벗어나 부모자신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모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- 이에, 모든 시민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정신적·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·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“부모학습”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, 기본원칙,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).

- 나. 부모학습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과 부모학습의 내용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다. 부모학습에 관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한 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- 라. 부모학습 사업의 민간위탁, 사업추진 경비의 지원, 관계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.

### **3. 조례안 : 붙임**

### **4. 의견제출**

- 제출기일 : 2021년 4월 15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 명 :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#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영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제8-481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4월 8일

발의의원 : 김영희 의원

찬성의원 : 장인수, 김명철, 이상복,  
성길용, 이성혁 의원

## □ 제안이유

- 최근에 수동적인 개념의 부모교육에서 벗어나 부모자신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모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- 이에, 모든 시민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정신적·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·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“부모학습”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, 기본원칙,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).
- 나. 부모학습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과 부모학습의 내용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다. 부모학습에 관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한 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- 라. 부모학습 사업의 민간위탁, 사업추진 경비의 지원, 관계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.

## 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  - 「지방자치법」, 「교육기본법」, 「평생교육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」
  - 「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

##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시민이 정신적·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·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부모학습”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, 기술을 제공하고,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,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,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4조(기본원칙)**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,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.

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.

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.

④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.

**제5조(시장의 책무)**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, 관련기관·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부모학습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
2.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
3.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
4.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5.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6.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「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**제7조(부모학습의 내용)**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
2.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
3.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
4.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,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
5.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
6.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
7.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

**제8조(부모학습협의회)**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부모학습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「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.

**제9조(사무의 위탁)**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0조(재정지원)**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·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**제11조(교류·협력 등)**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오산시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## **【별첨】**

# **관계법령 발췌서**

## **「지방자치법」**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**「교육기본법」**

제3조(학습권)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10조(사회교육)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.

② 사회교육의 이수(履修)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.

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·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## **「평생교육법」**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

##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「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

제3조(기본원칙) ②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6조(설치)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오산시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 4. 18>

제7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
4. 오산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

제8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18>

1.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시 및 교육 공무원
2. 시의회 의원
3. 평생교육 전문가 및 교수
4.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
5.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